

특집4 _ 인권으로 행복한 충남

충남 여성인권 실태와 과제

신혜지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최근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은 사적인 공간에서 경제, 문화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고 있으나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 경제, 범죄 등 영역에서 여전히 여성의 인권수준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충남의 여성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여성인권의 항목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첫째 차별금지 및 성평등실현 기반 구축, 둘째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셋째 여성소수자 정책 강화, 넷째 여성의 경제참여권 보장이 요구된다.

1) 차별금지 및 성평등실현 기반 구축

차별금지 및 성평등실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여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정책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평등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2)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해서 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해자의 교정치료, 성매매 범죄인식을 세부항목으로 설정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예방 및 사회적 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3) 여성소수자 정책 강화

여성소수자 정책 강화를 위해서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지원 및 자립역량지원을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여 여성소수자의 권리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4) 여성의 경제참여권 보장

여성의 경제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일 가정양립지원 정책, 여성 농업인, 사회서비스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세부항목으로 설정한다.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성인권의 실태

인권항목별로 충청남도 여성의 인권적 측면에서 갖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성차별금지 및 성평등실현 기반 미비

충청남도는 성평등에 대한 전반적 인식수준이 여전히 낮으며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으로 가부장성이 강하고 대중여성들, 도민 전반의 성평등,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지 않다. 따라서 성인지감수성 교육, 인권교육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도민이 대다수이다.

또한 성인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행 및 환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통계에 성별분리통계가 미비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수혜율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여성들의 정치, 사회참여 수준이 낮다. 국제의원연맹에 따르면 평균 중 19.1%가 여성이지만, 우리나라 여성 선출직은 7%에 불과하다. 기초의원 여성 당선자 비율은 광명 33%에 비해 충남 18%로 낮은 수치이며, 전국적으로도 충남이 더 저조한 편이다.

2) 여성에 대한 폭력 대처 및 지원 미흡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등의 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대규모 강의 중심, 보수적인 교육 참여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식개선의 실효성이 낮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쉼터와 같은 공동시설 생활의 어려움이 있어 가정 생활과 같은 형태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 가해자 문제가 매우 중요하나 교정치료 등이 미약하다. 현재 복권기금에 의해 보호관찰소 관리하에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있으나 실제 치료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성폭력은 범죄화 인식이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다. 성매매가 만연해 있는 사회현실과 유사성매매업 등이 지역 곳곳에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3) 여성소수자 사회적 배제 대처방안 미흡

지적, 정신, 빨달 장애인들이 성폭력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 성폭력을 당했을 시에 임시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의 부녀회장, 이장 등 1:1 상담 및 지속적인 가정방문 등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충남의 특수학교 6곳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 대상으로 한 성 인권교육도 부족하다.

다문화가족은 멘토-멘티 제도를 많이 맺고 있으나 부녀회, 새마을지도회 등 마을 회의 논의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특히 다문화 가족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북한 이탈주민의 대다수가 여성이며 현재 경찰과 교회에서 지도·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면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렇듯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 대처방안이 미흡하며 여성소수자의 지원체계가 파편화되어 있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이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4) 여성의 경제참여권 취약

충청남도는 일·가정양립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미비하다. 충남지역은 고학력 여성경제활동률이 낮은데, 이는 일·가정양립정책이 제도화되어 있고 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절 높은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 일·가정양립정책이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취약계층여성들이 종사하는 직종(비정규 저임금직)에서는 지원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사회에서 여성 농어업인은 그 역할에 비해 2차적 지위만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농어업에 대해 공동으로 경영하고 노동하지만, 대표성은 대부분 남성(남편)에게 주어지며, 재산권도 매우 약한 실정이다. 농어업인을 위한 교육 등에서도 남성에 비해 수혜율이 매우 낮으며 여성농어업인 가구주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비하다. 여성농어업종사자 증가와 더불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문제가 크다. 농어촌 지역에 조손가정이 증가하면서 빈곤문제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책은 미흡하다. 특히 여성고령 농어업인이 증가되고 있어 의료비 지원, 생활지원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여성이 대다수인 사회서비스·돌봄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최저임금 내외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으며 돌봄노동자들의 경우 업무 중 성희롱 등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되고 개인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노동, 사회서비스노동은 계속 확대되고 그 요구도 폭발적일 것이다.

결론 및 정책제언

여성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차별금지 및 성평등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성인지감수성 교육, 인권교육에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도민이 대다수이므로 주기적·구체적·단계적으로 양성평등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어 성차별의 양상을 드러내고, 정책개선안들이 환류되어 정책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에서는 현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켜야 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은 뿐만 아니라 성차별을 기반으로 하므로 항시적이고 예방적인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개인 및 가족까지 통합적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재발방지와 함께 가해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가해자치료프로그램 확대 및 사회통합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성매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업, 인신매매 등과 얹힌 사회구조적인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여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여성장애인, 성소수자 등 여성소수자의 보건·복지지원 및 자립역량을 높여야 한다. 여성소수자들은 여성이면서 소수자라는 이중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소수자의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며, 마을단위에서의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여성의 실질적 경제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취약계층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및 양육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농어촌사회에서 여성 농어업인의 높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재산권,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를 제고해야 한다. 고령화되고 개인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노동, 사회서비스노동에 대한 요구는 계속 확대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분야가 가장 대표적인 열악한 노동환경분야이므로 처우개선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